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12
----------	----------

발의연월일 : 2006년 3월 16일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6인

제안이유

- 지난해 10월 우리 군의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가 결성 되었고, 11월 4,500여 명 주민의 서명을 받아 무상급식 원칙의 확인,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안이 집행부에 접수되어,
- 이에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청구한 거창군 지역주민과 운동본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도시로서의 거창군의 위상과 면모를 드높이고자, 기존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의 개정안을 제안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제명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를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여 군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안 제1조)
- 학교급식 식품비의 예산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학교급식관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 (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를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산물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급식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있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초·중·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급식비와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중 “규칙으로”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제1항 중 “13”을 “15”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학교 교사”를 “교원단체”로 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거창군 소재 학교영양사 단체 1인

제7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소재 시민단체 1인

제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역 언론인 단체 1인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 ①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는 제10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원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재료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1.~4. (생략)</p> <p><신설></p> <p>제3조(예산 지원 등) ①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p>	<p>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산물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1.~4. (현행과 같음)</p> <p>5. “학교급식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있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p> <p>제3조(예산 지원 등) ①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p>

<p>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초·중·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규칙으로-----</p> <p><신 설></p> <p>제5조(지원신청)</p> <p>1.~3. (생 략)</p> <p>4. 우수 농·축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13인---</p> <p>② (생 략)</p>	<p>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초·중·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급식비와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p> <p>④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p> <p>제5조(지원신청)</p> <p>1.~3. (현행과 같음)</p> <p>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우수 농·축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15인---</p> <p>② (현행과 같음)</p>
--	--

<p>1.~4. (생략)</p> <p>5. -----<u>학교 교사</u>-----</p> <p>6. (생략)</p> <p>7. <u>거창군 소재 학교 영양사 1인</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1.~4. (현행과 같음)</p> <p>5. ---<u>교원단체</u>-----</p> <p>6.(현행과 같음)</p> <p>7. <u>거창군 소재 학교 영양사 단체 1인</u></p> <p>8. <u>거창군 소재 시민단체 1인</u></p> <p>9. <u>지역언론인 단체 1인</u></p> <p>제9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p> <p>① <u>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u>지원금을 교부받은 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에 따라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u>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11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p>

<p>제10조(지도·감독) ① (생략)</p> <p>②-----제9조-----</p> <p>③ (생략)</p> <p>제11조(수당 등)</p> <p>제12조(준용)</p> <p>제13조(시행규칙)</p>	<p>음)</p> <p>②-----제10조-----</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수당 등)</p> <p>제13조(준용)</p> <p>제14조(시행규칙)</p>
---	--